

「2023년 달성청년혁신센터 기술·경영 닥터」 지원사업 공고

달성군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운영하는 달성청년혁신센터에서 청년 창업기업의 창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한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성장지원을 위해 「2023년 달성청년혁신센터 기술·경영 닥터」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0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청년혁신센터장

I 사업개요

- 사업명 : 2023년 달성청년혁신센터 기술·경영 닥터
- 사업내용 : 창업기업 진단 및 수요에 따른 맞춤형 기술·경영 전문가 매칭을 통해 심층적인 문제 해결솔루션 지원 등
- 지원규모 : 7개사 내외, 기업당 멘토링 4회 지원*

* 포함내용: 기업진단 1회, 기술·경영 멘토링 2회, 종합컨설팅 1회

□ 신청자격 : 우수한 창업아이템¹⁾을 보유하고 대표가 청년²⁾인 달성군 소재³⁾ 7년 미만 창업기업⁴⁾

- 1)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등 기술창업분야 중심이되, 숙박·임대·단순 서비스업 제외
 - 2)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상 대표자의 연령이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이어야 하며, 공동 대표의 경우 모두 해당
 - 3)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본점, 기업부설연구소, 지점 중 1개 이상 소재지가 달성군 이어야 함
 - 4)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로부터 7년 미만이어야 함
- ※ 신청자격의 창업범위 해석은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그 시행령에 따름

□ 멘토링 분야

구분	분야	주요내용
기술	기술사업화	특허/인증, R&D개발, 현장애로기술, 국내외 기술정보 등
	기타	기업진단, BM 검증 및 고도화, 핵심특허 확보, IP 경영전략 수립 등
경영	경영	재무/회계, 인사/노무, 특허/법률, 경영전략, 생산/품질관리 등
	마케팅	시장조사, 온라인 마케팅, 제품/페이지 디자인, 브랜드 개발 등
	자금확보	IR/투자, 자금(금융)확보, 정부지원사업, TIPS 프로그램 연계 등
	수출	무역, 판로개척, 현지시장정보, 바이어 발굴, 신시장 개척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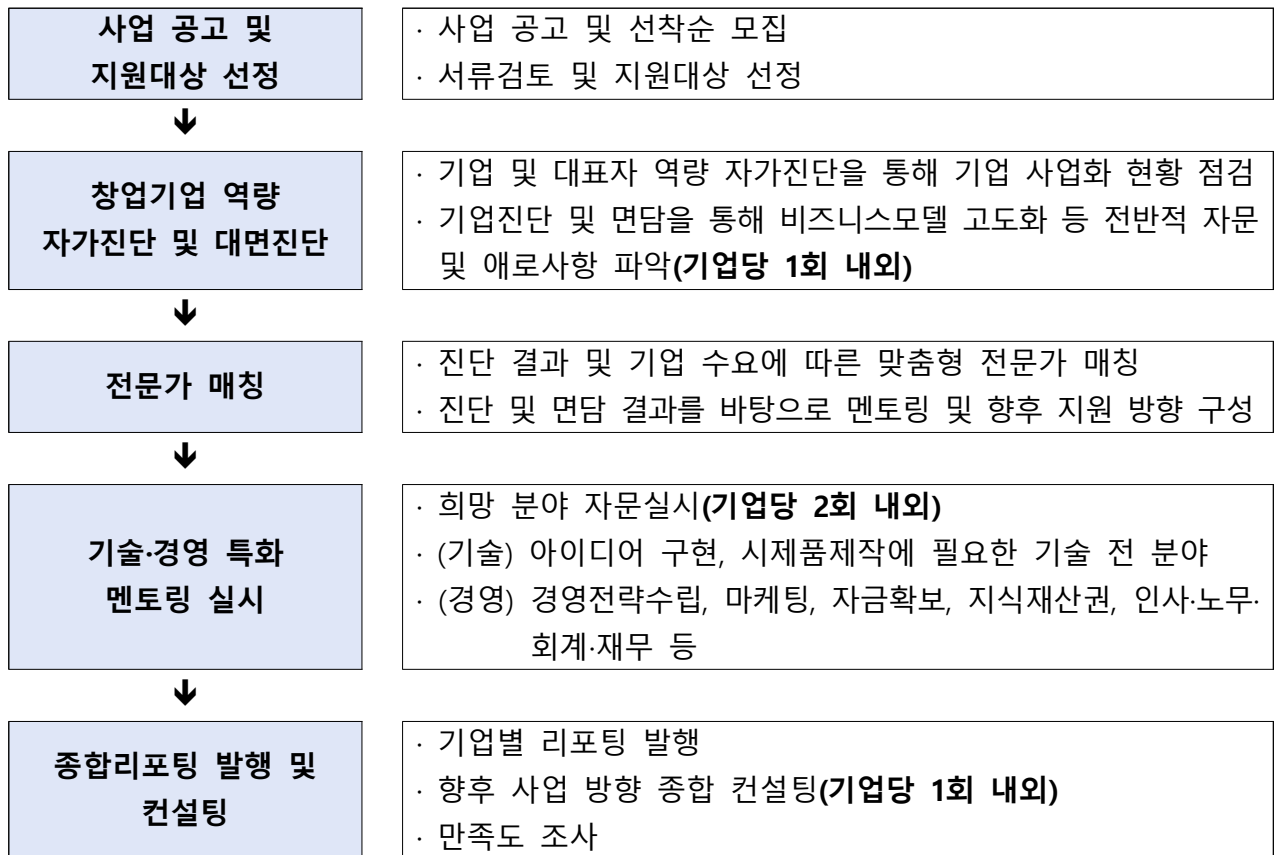
□ 지원사업 혜택

- 전문 엑셀러레이터의 기업진단 프로그램 및 종합리포팅 보고서 무료 제공
- 지원기업 희망 전문가와 매칭을 통한 멘토링 자문 지원 및 네트워킹 기회 제공 등

II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선정 시 ~ 2023. 10. 31.(화) 이내

□ 지원절차 및 세부내용



III 신청방법 및 선정절차

□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착순 접수 및 모집마감으로 진행하되, 서류검토 이후 최종 선정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 및 접수 방법

- 접수기간 : 2023.08.10.(목) ~ 08.31(목) 18:00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을 통한 접수(dalseongyouth@dgist.ac.kr)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필수 제출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붙임1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활용 동의서	붙임2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만 해당)	홈텍스 및 인터넷등기소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홈텍스 및 민원24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모두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상기 위 제출 서류는 반드시 날인하여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 ※ 주민번호 뒷자리 등 개인정보는 반드시 마킹하여 제출 ※ 서명 및 날인을 포함한 필수제출 서류 미제출(미비) 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문의처

- 달성청년혁신센터 이은정 매니저
- 053-643-2031 / dalseongyouth@dgist.ac.kr

IV 유의사항

□ 신청 제한 안내

- 아래에 해당되는 자(기업)은 신청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단,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단, 세금 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는 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 지원제외 대상 업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기업)

☞ 기타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기타(유의)사항

-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선정 취소·타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된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달성청년혁신센터의 입주기업(예비창업팀 포함)은 공고 접수와 관계없이 필수 지원하며, 신청 불필요
- 상기 공고의 사항은 달성청년혁신센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2023년 달성청년혁신센터 기술·경영 닥터」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붙임 2. 「2023년 달성청년혁신센터 기술·경영 닥터」 지원사업 개인(기업)정보 제공·수집·이용 동의서 1부. 끝.